

2.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952
----------	-----

제출년월일 : 2003. 9.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우리 구청사는 8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어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 : 구의 출연금(세입예산의 1% 이상),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교부금(교부세), 기금운용 수익금, 구유재산의 매각대금(30% 이상) 등으로 조성(안 제3조)
- 나. 기금의 관리 : 기금계좌를 구 금고에 별도로 관리(안 제5조)
- 다. 심의회 설치 : 위원장(부구청장)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안 제6조)
- 라. 심의회 기능 :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관리)

나. 관련지침

- 2003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220쪽)
-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연구 용역계획(구청장방침 제 1684호 : 총무 12460-4186, 2002.10.31)

4. 예산수반사항 :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

5. 제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 신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세입예산의 1% 이상)
2.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교부금(교부세)
3. 기금운용 수익금
4. 구유재산의 매각대금(30% 이상)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1. 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2. 구 본청의 각 국장
3. 지역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자

4.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지출원을 임명한다.

②제1항의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 기금지출원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지출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